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 확대(안 제9조)

폐타이어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므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타이어를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신기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에 한정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에까지 확대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 확대(안 제10조)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해당 석산 내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폐석분 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 재활용업 기술능력 기준 완화 등(안 제50조 및 별표 7)

처리방법이 단순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소규모·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자격자를 갖추 필요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요원으로 임명하면 기술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러한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1년마다 한국폐기물협회 등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 일정 수준의 기술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제10조제10호의2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채석 지역 내 하부복구지나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호 다목·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보관시설”을 각각 “임시보관시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 중 “소재지나 영업구역”을 각각 “소재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중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을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지나 고철을 선별”을 “선별”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5 제5호나목8) 중 “약물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3)나) 중 “소독



포장과 법률

약품 및 장비”를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로 하며, 같은 호 라목4) 중 “소독을”을 “약물소독을”로,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로 하고, 같은 목 5)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의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을 “약물소독”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6호나목 중 “덩어리·알갱이 등의”를 “덩어리·알갱이 등 고체의”로 하고, 같은 표 제 2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수리·수선”을 각각 “수리·수선 또는 세척”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별표 5의2 제4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지·고철을”을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폐지·고철”을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 등”을 “폐페인트·폐래커·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유발물질”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 또는 부숙도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별표 8 제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6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로, “수리·수선하여”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1. (생략) 2. (생략) ③~⑥ (생략)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페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_____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 10. (생 략)</p> <p>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p> <p>가. ~ 라. (생 략)</p> <p>〈신 설〉</p> <p>마. (생 략)</p> <p>11. (생 략)</p> <p>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생 략)</p> <p>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 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 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가. · 나. (생 략)</p> <p>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p> <p>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p>	<p>_____.</p> <p>1. ~ 10. (현행과 같음)</p> <p>10의 2. _____</p> <p>_____</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수분함량 30 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나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p> <p>바. (현행 마목과 같음)</p> <p>11. (현행과 같음)</p> <p>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 임시보관시설 _____, _____ 임시보관시설 _____.</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임시보관시설 _____</p> <p>라. 임시보관시설 _____ — 임시보관시설 _____</p>

현행	개정안
<p>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1. (생략)</p> <p>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4. ~ 5. (생략)</p> <p>③·④ (생략)</p>	<p>② _____</p> <p>_____</p> <p>_____ 임시 보관 시설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임시보관시설 _____</p> <p>3. 임시보관시설 _____</p> <p>_____</p> <p>4. ~ 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p> <p>가. (생략)</p> <p>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p> <p>다. ~ 아. (생략)</p> <p>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p>	<p>제 29조 (폐 기 물 처 리 업 의 변 경 허 가) ① _____</p> <p>_____.</p> <p>1. (생략)</p> <p>2. _____</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_____ 소재지 _____</p> <p>다. ~ 아. (현행과 같음)</p> <p>3.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가.·나. (생략)</p> <p>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p> <p>라.~아.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소재지—————</p> <p>라.~아.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p> <p>—————.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② (생략)</p> <p>③ 법 제46호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1. 2. (생략)</p> <p>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p> <p>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을 말한다.</p> <p>⑤·⑥ (생략)</p> <p>제82조(허가 등의 수수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신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단서 신설></p>	<p>3. 발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p> <p>_____.</p> <p>1. 2. (현행과 같음)</p> <p>3. _____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_____</p> <p>④ _____ 선별 _____.</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82조(허가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p>